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2-013-097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2. 8. 10.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가.에 대한 시정권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직원 수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¹)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²⁾」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0. 7. 31. ~ '22. 5. 27.)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주요 경과) 피신고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공익신고가 접수(20. 7. 31.)되어 조사를 실시함

(사실확인 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18.10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보유기간 2년)한 사실이 있음

^{1) 2020. 8. 5.} 시행된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2항), 법 시행 전 행정 안전부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3항)

²⁾ 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개정 시행(2020.8.5.)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10.19.시행] 적용

- * '18.10월 당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근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현재 개정 폐지됨)였으며, 동 조례 및 규칙에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음
 - 이후 피신고인은 「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19.12.30)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 서식을 마련함

피심인은 소속 직원이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존재 하지 않아 피심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행위사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8.10월 자원봉사자 모집시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6. 1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7.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제15조제1항 제1호)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원봉사자 모집시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한 것은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위반 항목	위반 내용	위반조항	처분조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보호법	보호법 §75① 제1호
동의 위반	명시적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음	§15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권고

- 가.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나. 가.에 대한 시정권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V. 결론

피심인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 (시정조치 등)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